



제439회국회(정기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명시 등 〉

■ 김기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312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명시 등	3
 [참고자료 1]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 개요	18
[참고자료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1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기표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4. 14.

다. 회 부 일 : 2026. 4.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식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음.

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42조 등).

Ⅲ. 검토의견

1. 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명시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①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유·초·중·고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③휴가 사용, 대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대체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제6항 및 제42조제3항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생략) ④ <u>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u> <u><신설></u>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육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그 업무를 대행할----- -----배치하여야 한다.</u> 1. <u>관계 법령, 정관 또는 어린이집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결혼, 사망, 출산휴가, 모성보호 휴가</u>

	<u>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경 우</u>
<u><신 설></u>	<u>2. 연수, 보수교육, 보육 현장 지 원을 위한 파견 또는 출장 등에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u>
<u><신 설></u>	<u>3.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u>
<u><신 설></u>	<u>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 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 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는 경우</u>
<u><신 설></u>	<u>5. 본인 및 가족의 질병·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긴 급지원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u>
<u><신 설></u>	<u>⑤ 제4항에 따라 배치되는 대체 인력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u>
<u><신 설></u>	<u>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 항에 따른 대체인력의 원활한 배 치를 위하여 「유아교육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와 연계된 통합 대체인력 지원</u>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고와 검사)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시스템(이하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운영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보육교직원·대체인력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대체인력의 자격 및 지원 범위,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제42조(보고와 검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거나 관할청에 이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 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2의2. (생략) 3. <u>제17조제5항에</u> 따른 보육교직 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 ~ 8. (생략)	<u>⑤ 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주 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 육부령으로 정한다.</u>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 ----- ----- ----- ----- -----. 1. ~ 2의2. (현행과 같음) 3. <u>제17조제7항에</u>----- ----- 3의2. ~ 8.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조, 제17조제4항·제5항 및 시행규칙 별표 2¹⁾에 따르면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순번제로 실시하되, 휴가, 보수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에는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대체인력 지원 및 관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인력을 지원받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 미설치²⁾ 등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있음.
- 참고로,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직접 채용한 어린이집을 포함하여 현행법 제36조³⁾에 따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6의2.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

② ~ ⑥ (생략)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 ③ (생략)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

2. 보육교직원의 복무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 2)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12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설치율은 53.7%에 불과함.
- 3)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최근 3년간 대체교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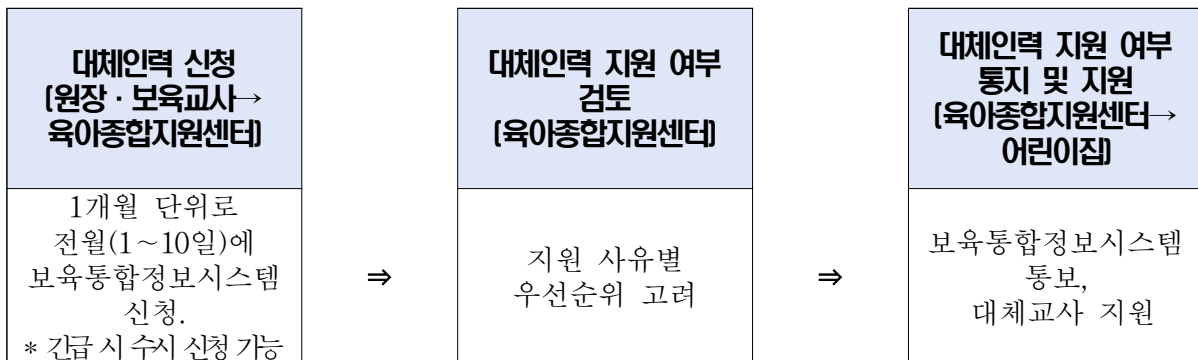
(연도별 12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직접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
2023	2,686	2,550
2024	2,886	2,479
2025	3,021	2,544

※ 자료 : 교육부, 보육통계 및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추출 자료 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신청은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현행법 제9조의34)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1개월 단위로 전월(1일~10일)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질병, 가족상 등 긴급 사유 발생 시에는 시스템 외 유선, Fax 등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대체인력 지원 절차]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 경비 및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등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 4)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대체인력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구분	우선 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5일	사전 신청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연가	연간 1~15일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건강검진*	1일	
	4	어린이집 자율관리(컨설팅)지원	회당 1일	
	5	보수교육(승급교육, 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수시 신청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 10일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 3일	
		유산 (~15주(10일))	5일 최대 10일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 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20일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 3일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 5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보육교사 연 1회 건강검진 실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 휴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 감염병 질환 의심으로 결핵균 배양검사가 필요한 경우 법정 격리기간 동안 격리해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0일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 지원 가능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사유로 대체교사가 파견되는 경우, 어린이집은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기관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

***** 보육교사 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지원 신청 시, 보육교사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및 지원 가능

□ 그런데 대체인력 배치에 대한 의무 주체 및 사유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체인력 지원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지원을 받는 비율이 2025년 기준 66.4%에 그치는 등 대체인력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참고로, 교육부의 2024년도 보육 실태 조사⁵⁾에 따르면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7개 항목 중 ‘휴가 및 연차’ 항목이 3번째로 낮은 만족도(4점 척도 기준 2.8점, 불만족 32.4%)를 기록한 바 있음.

[최근 3년간 대체교사 신청 및 지원 현황]

(단위: 건, %)

구분	신청 건수 (A)	실제 지원 건수 (B)	지원율 (B/A)
2023	309,250	211,984	68.5
2024	342,671	231,338	67.5
2025	373,365	247,761	66.4

※ 자료 : 교육부

[보육교사 근무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만족하는 편	매우 만족	평균	평균	
						2021년	2018년
근무환경(전반)	2.1%	17.5%	58.6%	21.8%	3.0	3.1	3.2
물리적 환경(공간)	3.3%	21.8%	54.3%	20.6%	2.9	3.0	3.1
인적 환경(동료, 원장, 학부모 관계)	1.1%	11.5%	60.7%	26.7%	3.1	3.1	3.2
급여 수준	16.1%	38.7%	35.4%	9.8%	2.4	2.6	2.9
근로 및 휴게 시간	13.6%	34.9%	38.8%	12.7%	2.5	2.7*	3.1
휴일 및 연차	8.3%	24.1%	44.3%	23.3%	2.8		
일에 대한 보람	1.8%	10.9%	61.3%	26.0%	3.1	3.1	3.2

※ 자료 : 교육부 2024 보육실태조사

- 이에 개정안은 ①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②유·초·중·고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③휴가 사용, 대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5) 현행법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영유아보육법」 제9조(보육 실태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는 대체인력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육교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 다만,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 제35조(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 명시 등)

□ 개정안은 대체인력 배치의 의무 주체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 명시하고, 배치 사유 중 휴가에 대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⁶⁾에 따른 휴가의 종류(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체화하고 있음.

- 참고로, 개정안 제17조제4항제3호(병역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제4호(건강진단, 건강검진, 결핵검진 등)는 공가 사유, 제5호 중 본인 질병·사고는 병가 사유, 제5호 중 가족 질병·사고는 연가 사유에 해당됨.

□ 그런데 대체인력 배치 사유 중 하나인 휴가를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육교직원이 적용 받고 있는 「근로기준법」⁷⁾ 및 「남녀고

6)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假), 병가, 공가(公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제12호의 경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 ⑦ (생략)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8)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만 규정할 뿐 별도로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①현행 보육교직원의 휴가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 ②이미 현행법에 따른 대체인력 배치 사유인 휴가에 포섭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제17조제6항(유·초·중·고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개정안 제17조제6항은 보육교직원 대체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유·초·중·고 간 탄력적 인력 운용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와 연계된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이 서로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계·통합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9), 「유아교육법」 10) 및 「초·중등교육법」 11)에 따라 각각 달리 부여되어 서로 호환되지 않는바,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유치원교사 및 초·중등교사의 경우에는 보육교사의 대체인력으로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유치원과의 연계·통합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유보통합 의제

9)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10) 「유아교육법」 제22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1)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와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3) 제35조(휴가 사용 등에 관한 정기 점검 실시 등)

□ 개정안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휴가 사용, 대체인력 배치 현황 등 근로실태를 정기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 필요 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보육 실태 조사와 별도로 정기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9조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보육교직원 실태 전반에 대한 보육 실태 조사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고, 그 조사대상에 보육교직원 휴가 사용 실태와 대체인력 제도 실태가 포함되어 있는 바¹²⁾,

12)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p. 40, 교육부

〈표 I-2-2〉 전국보육실태조사-보육교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 내용
보육교사의 근무조건 및 처우	• 담당 연령반 및 담당 아동 수 • 근무시간, 휴일 및 주말근무, 편의공간(교사실, 식사공간, 휴게실, 화장실 등), 점심·휴게시간 및 장소, 당직 근무시간, 연장보육반 담당 실태, 시간외 근무 횟수 및 수당 지급 방식 • 복무규정 안내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기재내용·이행정도, 휴가 사용일수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임신기/육아기 단축근무 이용 여부 및 보장 관련 등 • 최저임금법 규정 준수 여부, 호봉, 경력에 따른 급여 상승 여부, 급여내역서 수령 여부 • 현 급여(기본급, 어린이집 지급 수당, 정부·지자체 지급 수당) 등 • 보수교육(직무 및 승급교육 등) 여부 및 교육방식, 법정 의무교육 실태(이수 종류, 시간, 지원 등), 보수교육 시 대체교사 지원 여부 및 이유
보육교사 신체·건강관리와 권익 보호	• 신체·정신건강 문제 경험 실태(내용, 병원진료 여부), 산업재해 보험 가입 여부, 산업재해 관련 경험 • 근무 시 어려움, 근무 상황별 스트레스 정도, 보육교사 권리침해에 대한 경험(주체, 유형, 대처 방식),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응 가이드(인지, 도움정도, 이유), 관련 진로상담 참여 여부, 권리침해 원인, 필요한 정책 등 • 어린이집 내 교사지원에 대한 인식, 근무 만족도, 어린이집 사이직 계획 및 이유 등
보육정책 및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관련 의견	•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편성·운영기준 및 운영 평가 실천 정도, 영유아 평가 시 사용하는 방법,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운영 시 도움이 된 지원, 필요한 지원 • 보육 정책 만족도, CCTV 도움정도
보육교사 인적사항	• 성별, 연령, 결혼 상태, 최종학력, 전공, 자격증, 최초 자격 취득기관, 근무경력 등

이와 별도로 유사 사항에 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할 경우 행정 및 예산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고 반복 조사로 인한 조사대상자(어린이집 등)의 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보육 실태 조사의 대상에 제외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4조의2¹³⁾에 따라 별도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음.

□ 둘째,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권과의 권한 충돌 및 현행 시정명령 등과의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보육교직원 휴가 사용 보장의 감독권은 「근로기준법」¹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부여되어 있고,

대체인력 배치 의무 위반 사항은 이미 현행법 제44조¹⁵⁾ 및 제45조¹⁶⁾에 따라 시정명령 등 및 제재 처분의 대상이 되는바,

13)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교육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4)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 (생략)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 ④ (생략)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5)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6) 「영유아보육법」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

개정안에 따라 휴가 사용 및 배치 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신설할 경우 고용노동부 권한과 충돌이 발생하고, 기존 시정명령 등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체인력 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등 및 제재처분 사례]

(단위: 건, %)

구분	시정명령 등	제재 처분		비고
		운영정지	폐쇄명령	
2023	2	-	-	-
2024	7	-	-	-
2025	3	1	-	-

※ 자료 : 교육부

[개정안 관련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 교육부 -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하도록 기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어린이집과 학교급별 대체인력의 자격·역할, 지원체계 등이 달라 통합대체인력지원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지방자치단체(부산, 서울) - 대체교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대체인력 배치 의무 부여 시 어린이집 운영 및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 시정명령 등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 대체교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대체교사 인력 확충 선행, 대체인력 운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긴급 사유 및 대체인력 배치가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한 예외적 조치 사항에 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교직원 등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제4호 또는 제5호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본다(설치·운영자가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 ⑥ (생략)

문 의 처
02)6788-5187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임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의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를 지원

나.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동일

다. 지원단가 및 지원기준

- 지원단가: 일 99,880원(8시간 기준)
 -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지원기준
 - 실제 근무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원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원
 - 보조교사(영아반, 누리반) 및 연장보육교사는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경우 동일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 겸임이 가능하며, 대체교사 근무 인건비 별도 지원 가능

라.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다만, 지자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체교사 인력 풀에 포함된 대체교사일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관련 구비서류 제출 불요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시·군·구로 보조금 신청
- 매월 말까지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 증빙서류: 연가, 보수교육 등 확인서류(근무상황부, 보수교육 이수증 등), 급여지급명세서 등

마. 유의사항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특정 어린이집이나 보육교사에게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지자체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사유별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 자료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교육부

참고 2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2026년 6월 기준, 단위: 개, %)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센터 개소수 (A)	시군구 수 (B)	설치율 (A/B)
계	142	1	18	123	229	53.7%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14	-	1	13 강서구,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 금정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16	81.3%
대구	4	-	1	3 동구, 수성구, 달성군	9	33.3%
인천	9	-	1	8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동구, 중구	11	72.7%
광주	3	-	1	2 동구, 서구	5	40.0%
대전	3	-	1	2 대덕구, 서구	5	4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0	0	-
경기	34	-	1	22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21	104.8%
경기북부		-	1	10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연천군, 동두천시	10	100.0%
강원	5	-	1	4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삼척시	18	22.2%
충북	6	-	1	5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영동군	11	45.5%
충남	4	-	1	3 아산시, 천안시, 서산시	15	20.0%
전북	8	-	1	7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부안군, 남원시, 김제시	14	50.0%
전남	4	-	1	3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22	13.6%
경북	7	-	1	6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구미시	22	27.3%
경남	5	-	1	4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18	22.2%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50.0%

자료: 교육부